## 근대 미국흑인들의 처지를 통해본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성

전 미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앵글로-쌕슨족은 인디안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하였을뿐아니라 범죄적인 흑인노예무역과 흑인노예제도를 합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노예상인과 농장주로 자라났습니다. 인디안의 피로 얼룩지고 흑인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솟아난 미국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진 인종주의국가의 표본입니다.》(《김정일전집》제2권 493폐지)

미국은 국가형성초기부터 야만적인 흑인노예제도를 합법화하고 흑인들의 초보적인 인 권마저 무참히 유린말살한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국가이다.

야만적인 인디안살륙전을 벌려 《제노사이드의 모국》으로 악명을 펼친 앵글로-쌕슨족의 무리들은 부족되는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양건너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었다. 그리하여 이미 노예사회와 함께 력사에서 사라져버린 극악한 노예제도가 근대미국에 존재하게 되였다.

이 글에서는 흑인노예들의 신분과 처지를 규정한 근대미국의 법률을 통하여 미국식민 주주의의 반동성을 까밝히려고 한다.

미국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북아메리카 뉴잉글랜드의 거의 모든 식민주(13개 식민주들중 12개)들에서 흑인들의 노예적신분과 그에 따르는 처지, 노예들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국가형성후에 그것이 그대로 합법화되었다.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근대미국에서 흑인들의 노예신분과 그 세습이 합법화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뉴잉글랜드의 여러 주들에서는 북아메리카의 흑인들과 그 자식들의 신분을 노예로 규정해놓음으로써 노예의 신분이 세습되게 하였다.

1663년에 제정된 메어릴런드주의 초기의 법률에는 《현재 이 식민지에 수입되는 모든 흑인들과 그밖의 노예들 그리고 앞으로 이 식민지에 수입되는 모든 흑인들은 한평생 노예로 되며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신분을 계승한다.》라고 규정되여있었다. 이 법률에서는 또한 노예가 자유민 녀성(영국인)과 결혼하여 생긴 아이들도 모두 아버지의 신분을 계승하여 노예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1740년에 남캐롤리너주에서도 《현재 이 식민지안에서 살고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흑인과 인디안(이미 자유인으로 된 사람은 제외) ··· 혼혈흑인과 혼혈인디안 그리고 그 자손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영원히 노예로 되며 그 신분은 어머니의 그것을 계승한다.》라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노예로 끌려온 남자흑인들의 자식은 무조건 노예로 되여야 한다는 이러한 법률은 당시 노예제가 실시되고있던 모든 주들에 존재하고있었다.

한편 노예와 자유민사이에 낳은 아이들도 노예로 되게 되여있었다.

1717년에 메어릴런드주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백인과 결혼하는 자유흑인 또는 자유혼혈흑인은 남자이건 녀자이건 모두 노예로 되게 되여있었다. 흑인은 곧 노예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혼혈흑인들에게도 적용되였으며 많은 주들에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버지니어주와 켄터키주에서는 흑인의 피가 4분의 1이상 몸에 흐르고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노예로 간주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노예인 경우 태여난 아이도 모두 노예로 인

정되였다.

혹인은 모두 노예로 되여야 한다는 이러한 법률은 백인종만이 우수한 인종이며 유색 인종은 응당 백인종의 지배와 멸시를 받아야 한다는 극악한 인종주의가 근대미국에서 사 회관계의 기초를 이루고있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근대미국에서 흑인노예를 노예주의 재산이나 집 짐승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예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박탈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형성초기 메어릴런드의 법에 의하면 노예가 낳은 아이는 출생시에 그 어머니를 소유하고있던 주인이 소유하게 되여있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소는 《가령 5년동안 빌려쓰기로 한 암말이 그 기간에 새끼를 낳으면 그 망아지는 응당 어미말의 사용권의 일부로 간주되고 사용자의 소유물로 된다. 이 점에서는 메어릴런드주에 거주하는 노예도 꼭같으며 말의 경우와 다를것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흑인녀성노예들의 처지가 특히 비참하였는데 그들은 보통 남자노예들과 꼭같이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하였으며 농장주의 성노리개로, 새끼낳는 어미말과 같이 취급당하였다.

노예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나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취급하였기때문에 법전들에서는 노예의 일체 공민권, 사법상의 권리와 혼인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재산소 유권을 박탈하였다.

노예들에게는 재산소유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가 얻은 재산은 자동적으로 주인의것으로 되였다. 실례로 루이지애너주에는 《노예의 모든 소유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며》 노예는 자기 의사로 《그것을 처분할수 없으며 재산을 증여받을수 없다.》라는 법률이 있었다.

이와 함께 노예들에게 책을 읽고 글쓰는 법을 가르치는것도 범죄로 규정되였는데 실례로 1740년 남캐롤러너주의 법에 의하면 흑인들에게 글을 가르친 사람에게 100US\$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여있었다.

노예들을 심문하고 판결처리하는 법관은 바로 노예주 자신이였으며 노예들은 증인을 내세우거나 증인이 될수도 없었다. 만일 1 000명의 흑인들이 백인이 노예를 죽이는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고대노예소유자사회에서처럼 노예를 짐승이나 재산처럼 규정한 미국의 법률은《문명》을 떠드는 미국이야말로 가장 미개한 야만인국가이며 앵글로-쌕슨족들이야말로 가장 야만 적인 식인종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근대미국에서 흑인노예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이 합법화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노예주는 노예를 채찍으로 때릴수 있고 도망한 노예는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도망치다가 붙잡힌 노예는 사형으로 처리하게 되였다.

노예들에 대한 극악한 처벌과 처형이 가장 널리, 로골적으로 진행된것은 미국의 남부 지역이였다.

남북전쟁전 미국의 남부지역에서는 비법적인 《사벌》(국가 또는 공공 권력이나 단체에 의 거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것. 사형이라고도 한다.)제도가 공 공연히 존재하고있었다.

노예주들은 노예들이 범한 극히 작은 《죄》에도 굶기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화형에 처

하는것 등과 같은 가혹한 정벌을 제멋대로 가하였다. 《범죄》가 비교적 클 때에는 법정을 조직하거나 혹은 치안법관이 조직한 특별법정을 여는데 그것도 사실 사설적인 법정이였다. 이러한 비법사설적인 법정은 흑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언제든지 즉시 소집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흑인들을 빨리 처벌하려는 백인들은 이런 법정을 여는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 노예주들은 아무런 법적절차도 밟음이 없이 흑인노예들을 처형하였다. 1855년에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싸트군에서는 3 000명의 군중앞에서 한명의 노예가 화형을 당하였는데 당국은 죽은 노예를 처리하고 노예주는 배상을 받았다. 그것은 노예주의 재산이 손상된것에 대한 《배상》이였다.

지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미국남부주들에서는 다 흑인노예들에 대한 야만적인 처벌을 규정한 법전과 법률들이 존재하였다.

당시 합법적으로 적용된 흑인노예들에 대한 처형방법은 채찍이나 가죽혁띠로 때리고 락인찍는 형, 귀를 베거나 팔다리에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 가두는 형, 화형과 교수형 등 이 있었다.

1862년에 수도 워싱톤에서 널리 적용된 법조문들중에서 일부 조문을 보면 노예가 만약 백인을 구타한다면 응당 귀를 베며 노예가 반란음모를 꾸미거나 방화하거나 혹은 누구를 죽인다면 응당 사형에 처한다고 되여있다. 이 사형방법에 의하면 오른손을 자른 후에 목매달아 죽이며 그 시체를 네갈래로 각을 떠서 공공장소에 매달아 군중들에게 보이게 되여있다.

도망노예는 문건상 그 어떤 절차도 없이 처리하며 반항하는자는 법에 의하여 쏘아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 죽이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여있었다.

흑인노예들을 처형하는데 직접 관여한 사람들은 아무런 소송에도 제기되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재정성으로부터 공공자금을 받게 되여있었다. 이것은 노예제밑에서 흑인들에 대한 처형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얼마나 야만적으로 진행되였는가를 말해주는 단편적인실례이다.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흑인노예들을 고의적으로 처형한 노예주들을 법 적으로 극력 비호해준데서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1740년에 남캐롤리너주에서 제정된 법률만 보더라도 노예들에 대한 노예주들의 야만적인 처형이 법적으로 은근한 비호를 받고있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 법률에는 고의적으로 노예를 죽인자에게는 700 £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발작적인 격한 감정에서》 노예를 죽인 경우에는 벌금을 350 £로 낮춘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혀를 자르고 눈을 뽑아내며 거세하거나 화상을 입히는것과 같은 행위는 100 £의 벌금을 무는 가벼운 범죄로밖에 되지 않는다.

흑인노예들에 대한 고의적인 살인을 감행한 노예주들에게 몇푼의 벌금이나 물리우게 되여있는 미국의 법전들은 결국 노예주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전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감싸고 비호해주기 위한것이였다. 노예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것도 노예들의 인격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노예를 처형함으로써 그의 주인이 입은 재산상손실을 메꾸어주기 위한 배상일뿐이였다.

이처럼 미국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안들의 령토를 강탈하여 북아메리카에 13개 식민주를 만든 초기부터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다 노예로 만들고 그들에 대한 야만 적인 억압과 착취, 무자비한 처형과 학대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고착시키였다.

사실 미국처럼 국가가 생겨난 첫날부터 《인권》이요, 《민주주의》요 하고 많이 떠든 나라도 별로 없지만 미국처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는 나라는 더욱더 없다.

지나온 력사는 미국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인종주의인 앵글로-쌕슨주의가 판을 치는 인종주의의 표본국가, 《문명》의 면사포를 쓴 가장 야만적인 인권불모지,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인종주의적테로가 횡행하는 《린치의 합중국》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미제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철저히 배격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